

의안번호 제101호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진호 의원 외 5명			
발의연월일	2017. 11. 17.			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01호 발의연월일 : 2017. 11. 17.

대표발의자 : 김진호

공동발의자 : 이충렬, 박승용,

임종진, 이계천,

민병춘

1. 제안이유

○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(이하 "민주평통시협의회"라 한다)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민주평통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민주평통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 지원신청, 정산보고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시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관련부서 검토사항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: 「논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제1항에 따라

입법예고로 주민의견 수렴

(2) 예고기간 : 2017. 11. 22. ~ 11. 26.(5일간)

(3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.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(이하 "민주평통시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평화통일에 관한 논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여론 수렴
 - 2.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
 - 3.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
 - 4.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3조(보조금 지원)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법 시행령」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
 - 2.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
 - 3.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
 - 4.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
 - 5.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

- 6. 남북교류협력 사업
- 7.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
- 8. 논산시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
- 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도 및 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포상)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「논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부서				성	T.	3	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	리원	김	진	ৢঽ	의원	능	6인

참 고

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재정법」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(개정 2014.5.28.)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〈개정 2014.5.28.〉
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,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를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3.5.22.〉

□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

제30조(지역협의회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 및 해외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한다)를 둘 수 있도록 하되,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2.29.]

□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- 제4조(보조대상 사업)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
 -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